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United States Non Tariff Barriers Issue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공식품에 5가지 유해 식품첨가물 사용금지 법안 통과 예정



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브롬화 식물성 기름 등) 5가지 사용금지 예정

2023년 2월 발의되었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5가지 유해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회 법안 《Assembly Bill 418(A.B.418)》이 2023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회에서 승인됨

1) 배경 : 브롬화 식물성 기름, 브롬산 칼륨, 프로필파라벤, 식용 색소 적색 3호, 이산화 티타늄은 매일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신경계 손상 및 과잉 행동 문제, 생식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 체계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음. 이로 인해 유럽 규제 당국은 2008년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하고, 해당 유해 화학물질 5가지의 식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음(단, 설탕에 절인 체리(candied cherries)에 사용되는 적색 3호 사용 기준 예외). 해당 성분은 사탕, 시리얼 및 기타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미국 FDA는 해당 물질을 GRAS 물질(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물질)로 인정하고 식품 사용을 허용함. 이에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회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 규제 당국의 결정을 따라 해당 5가지 유해 식품첨가물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해당 법안을 승인함

2) 대상 품목(성분):

- ①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CAS no. 8016-94-2))
- ② 브롬산 칼륨(Potassium bromate (CAS no. 7758-01-2))
- ③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CAS no. 94-13-3))
- ④ 식용 색소 적색 3호(Red dye 3(CAS no. 16423-68-0))
- ⑤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 (CAS no. 13463-67-7))

3) 추진 일정

- ① 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발의(2023년 2월 2일)
- ② 가공식품 중 유해 식품첨가물 금지 법안 하원 승인(2023년 5월 3일)
- ③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견 수렴 후 투표 절차를 통해 결정 예정
- ④ 법안 통과 시,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상업적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보관이 금지될 예정

한국은 적색 3호 및 이산화 티타늄 사용 가능, 《Assembly Bill 418》 추진 동향 주의해야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면 한국은 식용 색소로 사용되는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을 식품별 사용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가공식품에 사용 기준을 적용함. 한국에서는 사탕, 빵, 과자류 등의 가공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식품 제조 시 적색 3호와 이산화 티타늄을 사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ssembly Bill 418(A.B.418)》의 추진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이와 관련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식품첨가물 공전」 기준, 식용 색소 적색 3호 및 이산화 티타늄 한국 사용 기준

성분명(용도)	사용 기준
식용 색소 적색 3호 (색소)	<p>다음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하 3. 빙과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6. 기타 잼, 기타 설탕, 기타 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kg 이하 10. 향신료 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소스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3.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단무지 제외) : 0.2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이 미첨가된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kg 이하 17.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0.5g/kg 이하 19. 당류가공품 : 0.1g/k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22. 커피(표면장식에 한함) : 0.1g/kg 이하(식용 색소 적색 40호, 식용 색소 청색 제1호, 식용 색소 황색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g/kg 이하)
이산화 티타늄 (착색료)	<p>다음의 식품에 사용되어선 안됨</p> <p>: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 식빵, 카스텔라,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잼류, 유가공품, 식육가공품(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알가공품, 어육가공품류,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제외), 면류,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과채음료 제외),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 및 홍삼음료, 장류, 식초,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복합조미식품, 마요네즈, 김치류, 젓갈류,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절임제품은 제외), 단무지, 조림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조미김, 벌꿀류, 즉석조리식품, 레토르트식품,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은 제외)</p>

출처

EWG, California Assembly passes first-in-the-nation ban on chemicals in processed food, 2023.05.15

NBC Universal Media, If Passed, Assembly Bill 418 Will Prohibit Use of Toxic Chemical in Certain Foods, 2023.03.25